

서울시 사회주택 신청자격



- 서울시에서 학업 및 취업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**청년**
- 입주모집 공고일 당시 **무주택 1인 가구** 혹은 **예비 1인 가구**로서 **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**에 해당하는 자

· 자격확인서류:

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확인서

※ 자세한 정보는 뒷 페이지 QR코드 접속하시어 확인해주세요!

구분	70%	100%	120%
3인 이하 가구	3,938,828원	5,626,879원	6,752,276원

※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12. 31.] [서울특별시조례 제 7423호 2019.12.31. 타법개정]

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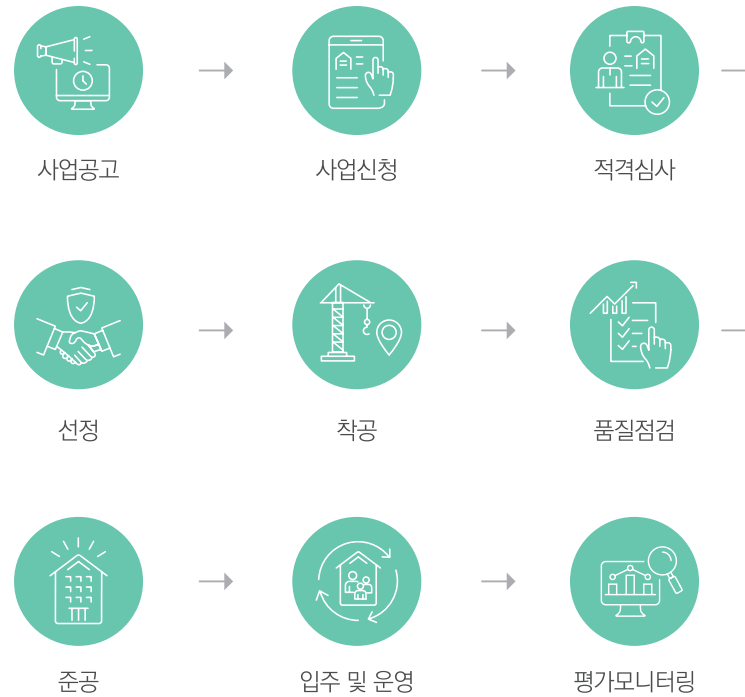
사회경제적 약자

- 중위소득 60% 이하 등 취약계층(차상위계층 등)
- 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약자
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무주택자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있는 자)
- 청년 등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

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

- 비영리법인, 공익법인, 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
-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해당기업

사회주택 사업 진행 구조도



자세한 사항은 '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좌측 QR코드로 확인해보세요.



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

SH 서울주택도시공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, 1층 | Tel. 02-6925-0990 | Fax. 02-3410-8555



본 제작물은 FSC인증된 친환경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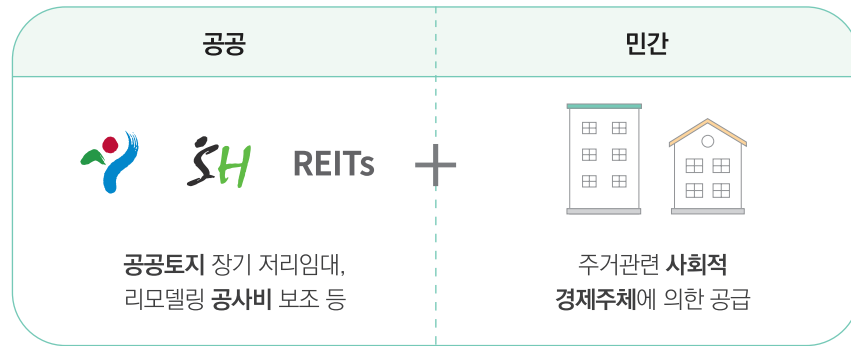
SH 서울주택도시공사

서울시 사회주택 특징

슬로건

아름다운 **어울림**, 행복의 **반울림**

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



주거취약계층 (청년, 신혼부부 등)

공동체성 추구

커뮤니티 공간 설치, **커뮤니티 활성화** 프로그램 운영 등



공공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 조건



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유형



토지임대부형

대상물건: 신축(다가구, 다세대주택, 다중주택)

지원내용: SH가 사업주체 제안 희망토지(18억 이내) 매입 후
저리로 장기임대(30 ~ 40년)

※ 2018. 10월 이후 토지지원리츠로 통합관리



리모델링형

대상물건: 노후 고시원

지원내용: SH공사 - 노후 비주택 매입, 사업자에게 장기저리 임대



사회주택리츠

대상물건: 신축 또는 리모델링(주택, 고시원 등)

지원내용: 리츠 - 사업대상지 확보 및 사업비 조달
사회적 경제주체 - PM 및 위탁운영(20~30년)



토지지원리츠

대상물건: 신축(다가구, 다세대주택, 다중주택, 오피스텔)

지원내용: 리츠 - 사업주체 제안 희망토지(250억원 이내) 매입 후
저리로 장기임대(30년)

※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.

사업자 역량강화지원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에서는 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
다양한 교육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커뮤니티 지원 사업



-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
-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(연 n회)
- 입주자 만족도 조사 공유(주택별, 요약본)

사회주택 아카데미



- **기초교육:** 사회주택 해본다학교 『A to Z』
- **심화교육:** 사회주택 직무별 역량강화교육
- **의무교육:** 법정의무교육 연계 및 지원

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



체계적인 사회주택 임대관리 및
입주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.

1. 사회주택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적정기준 제시
2.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

